

제352회 시소구의외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시소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참 고 자 료

I.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1
II.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조직별)	2
III.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3
IV.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조직별)	4
V. 2026년도 1억원 이상 간주처리 내역	5
VI. 관계 법령	7

[별첨1]

일반외계 세입 총괄표

2026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단위:천원)

장 · 관 · 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11,651,752	100.00%	975,563,542	100.00%	36,088,210	3.70%
100	지방세수입	387,771,481	38.33%	370,583,768	37.99%	17,187,713	4.64%
110	지방세	387,771,481	38.33%	370,583,768	37.99%	17,187,713	4.64%
111	보통세	385,601,481	38.12%	368,413,768	37.76%	17,187,713	4.67%
113	지난연도 수입	2,170,000	0.21%	2,170,000	0.22%	0	0.00%
200	세외수입	115,663,796	11.43%	113,060,117	11.59%	2,603,679	2.30%
210	경상적세외수입	81,857,412	8.09%	81,757,167	8.38%	100,245	0.12%
211	재산임대수입	435,932	0.04%	435,932	0.04%	0	0.00%
212	사용료수입	8,490,639	0.84%	8,490,639	0.87%	0	0.00%
213	수수료수입	17,849,779	1.76%	17,849,779	1.83%	0	0.00%
214	사업수입	74,852	0.01%	74,852	0.01%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52,535,965	5.19%	52,535,965	5.39%	0	0.00%
216	이자수입	2,470,245	0.24%	2,370,000	0.24%	100,245	4.23%
220	임시적세외수입	25,124,517	2.48%	22,683,288	2.33%	2,441,229	10.76%
221	재산매각수입	18,630,251	1.84%	18,044,240	1.85%	586,011	3.25%
223	보조금반환수입	1,935,009	0.19%	212,300	0.02%	1,722,709	811.45%
224	기타수입	4,559,257	0.45%	4,426,748	0.45%	132,509	2.99%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477,641	0.64%	6,415,436	0.66%	62,205	0.97%
231	과징금	268,696	0.03%	268,696	0.03%	0	0.00%
232	이행강제금	2,131,805	0.21%	2,131,805	0.22%	0	0.00%
233	변상금	993,881	0.10%	993,881	0.10%	0	0.00%
234	과태료	2,793,814	0.28%	2,793,814	0.29%	0	0.00%
235	환수금	63,205	0.01%	1,000	0.00%	62,205	6220.50%
236	부담금	195,440	0.02%	195,440	0.02%	0	0.00%
237	범칙금	30,800	0.00%	30,800	0.00%	0	0.00%
240	지난연도 수입	2,204,226	0.22%	2,204,226	0.23%	0	0.00%
241	지난연도 수입	2,204,226	0.22%	2,204,226	0.23%	0	0.00%
300	지방교부세 등	18,220,000	1.80%	18,220,000	1.87%	0	0.00%
310	지방교부세	18,220,000	1.80%	18,220,000	1.87%	0	0.00%
311	지방교부세	18,220,000	1.80%	18,220,000	1.87%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34,792,635	3.44%	34,792,635	3.57%	0	0.0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4,792,635	3.44%	34,792,635	3.57%	0	0.00%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4,792,635	3.44%	34,792,635	3.57%	0	0.00%
500	보조금	370,459,056	36.62%	366,921,001	37.61%	3,538,055	0.96%
510	국고보조금등	199,628,301	19.73%	198,256,306	20.32%	1,371,995	0.69%
511	국고보조금등	199,628,301	19.73%	198,256,306	20.32%	1,371,995	0.69%
520	시·도비보조금등	170,830,755	16.89%	168,664,695	17.29%	2,166,060	1.28%
521	시·도비보조금등	170,830,755	16.89%	168,664,695	17.29%	2,166,060	1.2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744,784	8.38%	71,986,021	7.38%	12,758,763	17.72%
710	보전수입등	81,503,724	8.06%	68,744,961	7.05%	12,758,763	18.56%
711	잉여금	64,746,433	6.40%	68,744,961	7.05%	△3,998,528	△5.82%
712	전년도이월금	13,219,142	1.31%	0	0.00%	13,219,142	순증
715	보조금등반환금	3,538,149	0.35%	0	0.00%	3,538,149	순증
720	내부거래	3,241,060	0.32%	3,241,060	0.33%	0	0.00%
722	예탁금및예수금	3,241,060	0.32%	3,241,060	0.33%	0	0.00%

[별첨2]

일반외계 세출 종괄표(조직별)

2026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

【 조직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11,651,752	100.00%	975,563,542	100.00%	36,088,210	3.70%
의 회 사 무 국		6,431,366	0.64%	6,316,708	0.65%	114,658	1.82%
감 사 담 당 관		293,649	0.03%	293,649	0.03%	0	0.00%
홍 보 담 당 관		2,252,313	0.22%	2,252,313	0.23%	0	0.00%
문 화 행 정 국		205,214,893	20.29%	198,019,986	20.30%	7,194,907	3.63%
	행 정 지 원 과	155,219,063	15.34%	153,687,596	15.75%	1,531,467	1.00%
	문 화 관 광 과	10,792,158	1.07%	10,526,108	1.08%	266,050	2.53%
	자 치 행 정 과	24,441,531	2.42%	20,534,741	2.10%	3,906,790	19.03%
	체 육 진 흥 과	13,043,495	1.29%	11,554,032	1.18%	1,489,463	12.89%
	오 - 케 이 민 원 센 터	1,718,646	0.17%	1,717,509	0.18%	1,137	0.07%
밖 은 미 래 국		77,133,183	7.62%	75,357,855	7.72%	1,775,328	2.36%
	일 자 리 경 제 과	21,518,229	2.13%	20,226,179	2.07%	1,292,050	6.39%
	아 동 청 년 과	11,319,854	1.12%	11,178,332	1.15%	141,522	1.27%
	교 육 지 원 과	34,568,766	3.42%	33,737,664	3.46%	831,102	2.46%
	기 후 환 경 과	1,807,502	0.18%	1,636,071	0.17%	171,431	10.48%
	스 마 트 도 시 과	7,918,832	0.78%	8,579,609	0.88%	△660,777	△7.70%
주 민 생 활 국		549,535,541	54.32%	531,978,281	54.53%	17,557,260	3.30%
	복 지 정 책 과	48,842,500	4.83%	47,500,112	4.87%	1,342,388	2.83%
	사 회 복 지 과	110,682,263	10.94%	105,512,040	10.82%	5,170,223	4.90%
	여 성 보 육 과	195,806,757	19.36%	194,062,020	19.89%	1,744,737	0.90%
	어 르 신 행 복 과	116,469,775	11.51%	107,196,216	10.99%	9,273,559	8.65%
	청 소 행 정 과	77,734,246	7.68%	77,707,893	7.97%	26,353	0.03%
기 획 재 정 국		23,932,702	2.37%	24,285,323	2.49%	△352,621	△1.45%
	기 획 예 산 과	13,165,941	1.30%	13,524,657	1.39%	△358,716	△2.65%
	재 무 과	8,615,218	0.85%	8,615,218	0.88%	0	0.00%
	세 무 관 리 과	1,014,161	0.10%	1,014,127	0.10%	34	0.00%
	재 산 세 과	778,137	0.08%	772,076	0.08%	6,061	0.79%
	지 방 소 득 세 과	359,245	0.04%	359,245	0.04%	0	0.00%
공 간 혁 신 국		35,286,642	3.49%	33,909,573	3.48%	1,377,069	4.06%
	교 통 행 정 과	3,692,807	0.37%	3,307,472	0.34%	385,335	11.65%
	도 시 계 획 과	159,934	0.02%	102,820	0.01%	57,114	55.55%
	공 공 인 프 라 과	2,193,446	0.22%	2,093,446	0.21%	100,000	4.78%
	푸 른 도 시 과	13,676,553	1.35%	12,858,309	1.32%	818,244	6.36%
	정 원 여 가 과	15,563,902	1.54%	15,547,526	1.59%	16,376	0.11%
도 시 관 리 국		4,254,492	0.42%	3,854,277	0.40%	400,215	10.38%
	재 건 축 사 업 과	1,154,862	0.11%	784,876	0.08%	369,986	47.14%
	건 축 과	360,370	0.04%	351,658	0.04%	8,712	2.48%
	공 동 주 택 관 리 과	1,284,226	0.13%	1,277,682	0.13%	6,544	0.51%
	도 시 디 자 인 과	998,622	0.10%	998,622	0.10%	0	0.00%
	부 동 산 정 보 과	456,412	0.05%	441,439	0.05%	14,973	3.39%
안 전 건 설 국		51,784,211	5.12%	47,497,563	4.87%	4,286,648	9.02%
	안 전 도 시 과	5,763,339	0.57%	5,742,521	0.59%	20,818	0.36%
	가 로 행 정 과	5,842,620	0.58%	4,613,683	0.47%	1,228,937	26.64%
	도 로 과	21,929,482	2.17%	19,513,232	2.00%	2,416,250	12.38%
	물 관 리 과	18,248,770	1.80%	17,628,127	1.81%	620,643	3.52%
보 건 소		55,532,760	5.49%	51,798,014	5.31%	3,734,746	7.21%
	건 강 정 책 과	23,587,906	2.33%	22,728,593	2.33%	859,313	3.78%
	건 강 관 리 과	27,611,417	2.73%	24,819,371	2.54%	2,792,046	11.25%
	위 생 과	730,564	0.07%	727,060	0.07%	3,504	0.48%
	의 료 지 원 과	3,198,535	0.32%	3,118,724	0.32%	79,811	2.56%
	방 배 보 건 지 소	228,088	0.02%	228,016	0.02%	72	0.03%
	서 초 보 건 지 소	176,250	0.02%	176,250	0.02%	0	0.00%

[별첨3]

특별외계 세입 총괄표

2026년도 추경 2 회 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29,098,754	100.00%	29,513,246	100.00%	△414,492	△1.40%
200	세외수입	19,146,628	65.80%	19,146,628	64.87%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1,740,211	40.35%	11,740,211	39.78%	0	0.00%
	211 재산임대수입	9,587	0.03%	9,587	0.03%	0	0.00%
	212 사용료수입	10,014,517	34.42%	10,014,517	33.93%	0	0.00%
	213 수수료수입	403,200	1.39%	403,200	1.37%	0	0.00%
	216 이자수입	1,312,907	4.51%	1,312,907	4.45%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5,840	0.05%	15,840	0.05%	0	0.00%
	224 기타수입	15,840	0.05%	15,840	0.05%	0	0.00%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111,492	17.57%	5,111,492	17.32%	0	0.00%
	232 이행강제금	612,292	2.10%	612,292	2.07%	0	0.00%
	234 과태료	4,499,200	15.46%	4,499,200	15.24%	0	0.00%
	240 지난연도 수입	2,279,085	7.83%	2,279,085	7.72%	0	0.00%
	241 지난연도 수입	2,279,085	7.83%	2,279,085	7.72%	0	0.00%
500	보조금	601,341	2.07%	561,341	1.90%	40,000	7.13%
	510 국고보조금등	215,180	0.74%	195,180	0.66%	20,000	10.25%
	511 국고보조금등	215,180	0.74%	195,180	0.66%	20,000	10.25%
	520 시·도비보조금등	386,161	1.33%	366,161	1.24%	20,000	5.46%
	521 시·도비보조금등	386,161	1.33%	366,161	1.24%	20,000	5.4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50,785	32.13%	9,805,277	33.22%	△454,492	△4.64%
	710 보전수입등	9,350,785	32.13%	9,805,277	33.22%	△454,492	△4.64%
	711 잉여금	9,313,664	32.01%	9,805,277	33.22%	△491,613	△5.01%
	712 전년도이월금	34,355	0.12%	0	0.00%	34,355	순증
	715 보조금등반환금	2,766	0.01%	0	0.00%	2,766	순증

[별첨4]

특별외계 세출 총괄표(조직별)

2026년도 추경 2 회 기타특별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9,098,754	100.00%	29,513,246	100.00%	△414,492	△1.40%
주 민 생 활 국		514,671	1.77%	390,360	1.32%	124,311	31.85%
	사 회 복 지 과	514,671	1.77%	390,360	1.32%	124,311	31.85%
공 간 혁 신 국		288,000	0.99%	288,000	0.98%	0	0.00%
	교 통 행 정 과	288,000	0.99%	288,000	0.98%	0	0.00%
도 시 관 리 국		1,037,119	3.56%	1,022,181	3.46%	14,938	1.46%
	건 축 과	1,037,119	3.56%	1,022,181	3.46%	14,938	1.46%
안 전 건 설 국		27,258,964	93.68%	27,812,705	94.24%	△553,741	△1.99%
	주 차 관 리 과	27,258,964	93.68%	27,812,705	94.24%	△553,741	△1.99%

[별첨5]

2026년도 1억원 이상 간주처리 내역 (2026.8.기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부서	간주금액	1억 (33건)	5억 (10건)	10억 (4건)
	총 계(47건)		39,414,264	7,123,993	6,298,762	25,991,509
1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문화관광과	210,000	210,000		
2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	자치행정과	197,568	197,568		
3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	100,000	100,000		
4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운영 (반포종합운동장대체죽구장설치)	체육진흥과	256,000	256,000		
5	공공체육시설개보수- 방배열린문화센터,서초종합체육관	체육진흥과	186,000	186,000		
6	공공체육시설확충(서초구파크골프장조성공사)	체육진흥과	1,217,000			1,217,000
7	미래교육지구운영	교육지원과	200,000	200,000		
8	도서관운영지원(공공도서관운영지원)	교육지원과	243,441	243,441		
9	도서관운영지원(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교육지원과	1,002,000			1,002,000
10	서울시지능형CCTV 고도화사업	스마트도시과	709,000		709,000	
11	자치구자가통신망관리강화구축사업	스마트도시과	300,000	300,000		
12	서울시 통합안전스마트폴구축사업	스마트도시과	250,000	250,000		
13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운영	복지정책과	257,336	257,336		
14	고유가피해지원금등등주민센터업무지원	복지정책과	156,769	156,769		
15	고유가피해지원금지원사업	복지정책과	21,318,704			21,318,704
16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사업)	사회복지과	2,453,805			2,453,805
17	4-5세무상보육비	여성보육과	848,222		848,222	
18	서초 초등키움센터 설치비지원	여성보육과	371,900	371,900		
19	노인복지관등운영지원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시스템냉난방공사)	어르신행복과	200,000	200,000		
20	종량제봉투제작	청소행정과	144,388	144,388		
21	인력운영비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소급액)	청소행정과	811,540		811,540	
22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세무관리과	200,000	200,000		
23	시소유공원유지관리	푸른도시과	447,000	447,000		

연번	사업명	부서	간주금액	1억 (33건)	5억 (10건)	10억 (4건)
24	소나무재선충병예방및방제	푸 른 도 시 과	200,000	200,000		
25	어린이공원및마을마당유지관리(잔디어린이공원어르신놀이터조성사업)	푸 른 도 시 과	100,000	100,000		
26	어린이공원및마을마당유지관리(고무래어린이공원정비)	푸 른 도 시 과	500,000		500,000	
27	산지형공원조성및유지관리(서리풀공원-방배동산17-4 사면등정리)	푸 른 도 시 과	100,000	100,000		
28	등산로조성및유지관리(스마트사방댐설치사업)	푸 른 도 시 과	300,000	300,000		
29	산지형공원조성및유지관리(방배근린공원환경정비사업)	푸 른 도 시 과	500,000		500,000	
30	수목식재사후관리	정 원 여 가 과	184,000	184,000		
31	녹지대조성및유지관리(양재천시설녹지환경개선사업)	정 원 여 가 과	600,000		600,000	
32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연계 정원 조성	정 원 여 가 과	680,000		680,000	
33	수변시설물유지관리(반포천심터및수변감성정원조성사업)	정 원 여 가 과	493,000	493,000		
34	수변시설물유지관리반포천(동작역~반포2교)경관개선사업	정 원 여 가 과	600,000		600,000	
35	공동주택활성화지원(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과	137,484	137,484		
36	재난예방및관리능력강화(해빙기취약시설긴급보수보강)	안 전 도 시 과	120,000	120,000		
37	제설대책민간용역	도 로 과	240,000	240,000		
38	명달로노후보도정비공사	도 로 과	200,000	200,000		
39	관내보도유지보수공사(반포천심터및수변감성정원조성사업-도로정비)	도 로 과	190,000	190,000		
40	현릉로언더패스노후배수펌프시설정비	도 로 과	200,000	200,000		
41	하수시설물유지보수	물 관 리 과	100,000	100,000		
42	빗물받이시설및개량공사(연속형빗물받이설치)	물 관 리 과	550,000		550,000	
43	반포천둔치산책로정비(반포천하류산책로정비)	물 관 리 과	200,000	200,000		
44	연속형빗물받이설치(반포동63-7일대)	물 관 리 과	500,000		500,000	
45	빗물받이준설공사	물 관 리 과	100,000	100,000		
4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전환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건 강 관 리 과	359,107	359,107		
47	달빛어린이병원운영지원	의 료 지 원 과	180,000	180,000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생략)
 - ② (생략)
-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12., 2023. 4. 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 ⑥ (생략)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도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 사.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 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홍보관 사업
 - 2)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마. 시·도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 ②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
 -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 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다)
 -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 1) 청사 신축사업
 - 2) 문화시설 신축사업
 - 3) 체육시설 신축사업
 - 마.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군·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 둘 이상의 시·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검토를 받은 경우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중등 교육 시설의 신·증축 사업

-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